

‘알 권리’ 침해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말 바꾸기

등록 :2017-06-13 19:59 수정 :2017-06-14 12:33

세월호 참사 날 등 정보목록 정보공개 청구 무대응
1심이 공개 취지 판결하자 2심에서 “정보목록 없다”
“법원 속였다”·“정보공개 피하려는 꼼수” 비판 나와

대통령 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한 기간의 정보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공개 취지로 판결하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정보를 숨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조차 하지 않아, 법원을 속인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경호실의 이런 주장은 13일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경호실이 답변 의무 최장 기한인 20일이 지나도록 침묵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기간의 정보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자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2심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당시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호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호실 문서는 대부분 보안 관련이라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어 2013년부터 국가기록원 기록 이관때까지 정보목록은 1건도 없다. 따라서 정보목록이 없다는 것은 삭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 대표는 “1심에서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돼 재판부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경호실 측은 ‘정보목록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정보목록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정보목록이 있다고 전제해 심리하고 판결한 법원도 속였다”고 비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국가정보원도 부족하게나마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경호실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1심 판결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제 와 정보가 없다고 하는 건 정보공개를 피하려는 꼼수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호실 관계자는 “처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착오였고,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법률 대리인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경호실의 무성의한 대응과 폐쇄적인 정보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